

## 2021년 상반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현황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1	교복구매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률 자문	
	2	공모교장의 직위 해제 관련	
	3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가산점 개정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4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 설립자 가족 지명 범위 검토	
	5	방과후 민간위탁 업체 구입 집기를 학교에서 구입 또는 대가를 지급 여부	
	6	만14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를 임의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제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7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자문 요청	
	8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관련	
	9	채권가압류 시, 제3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10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자문	
	11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항소 여부(실익) 및 변제공탁 관련	
	12	○○분교 무단점유자 대상 재산압류 진행 절차 및 실익 등에 대한 법률 자문	
	13	수사기관 자료제출(도서지역 생활비)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14	재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련 자문요청	
	15	학원 허위·과대광고 사무처리 관련 법률자문 요청	
	16	학원의 반영구 화장술 교습 수강생 모집과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17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18	계약해제 사유,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19	○○○중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계획에 의한 학교 경계 3면 옹벽 조성에 따라 재산 평가 저하(손실)에 해당되어 손실보상 가능유무	
	20	○○○중 개발계획 변경 인가시 부과된 조치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옹벽공사 중지 가능 여부	
	21	한전의 전기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의 유무상 여부	
	22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23	폐교 불법무단점유자 코로나확진과 관련한 법률자문	
	24	○○초 통학버스 입찰사무와 관련한 자문 요청	
	25	교육환경평가서 조치결과 이행관련 합의서 체결 조문 검토 의뢰	
	26	청탁금지법 사무처리와 관련된 법률 자문 요청	
	27	○○사랑터 기금에 관한 질의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28	○○초 2021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관련 자문 요청	
	29	지필고사 부정행위자 처리	
총계	29건		

※ 동일한 자문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

# 법률 자문 결과 보고서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	교복구매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률 자문	<p><input type="checkbox"/>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와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를 변조하여 제출한 교복업체와의 계약을 계약당사자인 학교가 해지할 수 있는지 문의</p> <p><input type="checkbox"/> 계약 당사자인 학교장이 유효한 계약을 변조된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해지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5장 제7절 3. 다’에 의거 교복제작을 위해 매입한 원단 값을 계약해지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해제’ 가능: 해당업체의 허위서류제출은 계약해제 사유가 되고, 이에 따라 해제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소급적으로’ 계약은 무효가 됨.</p> <p><input type="checkbox"/> 원단 값 지급의무 없음: 해제의 효력으로서 소급적으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해제의 원인에 책임있는 해당업체는 학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p> <p><input type="checkbox"/>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하여 계약 당사자인 학교장은 이를 근거로 교복납품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이 아직 교복 등을 납품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납품 계약의 해제는 변조된 서류의 제출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방의 고의에 의한 것이 명백한 바, 원단 값을 학교장 등이 지급할 이유 없음.</p> <p><input type="checkbox"/> 해당업체의 적극적 기망에 의한 고의로 판단되어 이는 범죄행위로 판단 됨. 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필요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임.</p> <p><input type="checkbox"/> 원단 값을 청구하겠다는 행위는 자신의 범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지급하지 말고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임.</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2	공모교장의 직위 해제 관련	<input type="checkbox"/> 범죄 행위에 따른 검찰의 처분결과로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했을 때 적절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현재 검찰에 기소되었고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언론을 통해서 사건이 노출되어 정상적인 학교 근무가 어렵기에 검찰 처분결과가 나올 경우 징계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안을 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로 판단하여 직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input type="checkbox"/> 일방적인 직의 해제는 안될 일이나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요청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을 따를 수 있다고 보여짐. <input type="checkbox"/> 범죄사실에 대해 상당히 소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교장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 직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3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중 가산점 개정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은 교육부에서 정하는 공통가산점과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선택가산점으로 되어있으며, 선택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교육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선택가산점에 ‘교육소외지역 근무 유공경력’을 추가하여 2022. 3. 1.자부터 승진 점수를 부여하되, 그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반영하는 시기는 3년의 유예기간 후인 2025. 3. 31.자 명부부터 적용하고자 하는데 점수부여 시기와 반영 시기가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input type="checkbox"/> 해당 규정은 명부작성권자에게 선택가산점과 관련하여 그 항목과 점수의 기준에 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넘어 적용시기 및 유예기간까지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임.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근무 성적평정을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동 규정 제41조제8항에서 가산점의 평정도 매 학년도 종료일 혹은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임. 가산점 평정표를 보더라도 선택가산점 평점을 공통가산점 평정과 같이 근무기관, 기간, 대상기간, 평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정기준 등으로 표를 마련하고 있어, 선택가산점에 있어서도 그 대상과 기준만 공통가산점평정과 차이가 날뿐 평정시기에 대하여도 명부작성권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기 어려워 보임</p> <p><input type="checkbox"/> 선택가산점은 시도별 특성과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합계가 1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정항목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교육감의 재량이 주어지는 것인 점, 선택가산점의 부여대상과 평정항목 및 점수기준은 평정기간 시작 전에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적용시기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은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부작성권자에게 선택가산점을 줄 항목과 배점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임. 선택가산점 항목에 ‘교육소외지역 근무 유공경력’을 추가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점을 2022.3.1.자로 부여하고, 유예기간 3년 후인 2025.3.31.자 명부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해 보이므로 ‘을’ 설이 타당함.</p> <p><input type="checkbox"/> 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교육감)이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한다는 내용에는 당연히 적용시기와 유예기간 등의 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가산점을 2022.3.1.부터 부여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는지 여부 등은 명부작성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됨.</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4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관련, 설립자 가족 지명 범위 검토	<input type="checkbox"/> 2018년~2021년까지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1순위가 설립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었음. 향후 그 범위를 설립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범위 확장이 가능한지 법률 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법령에서 규정한 원장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원장 자격의 범위를 지정하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1순위의 범위를 설립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설립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설립자의 가족으로서 설립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도 일반지원자에 대하여 선정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크게 해치지 않고, 그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
5	방과후 민간위탁 업체 구입 집기를 학교에서 구입 또는 대가 지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업체가 산 집기를 계약 종료 후 학교에서 구입하거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학교는 업체 측이 산 집기를 구입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을설) 학교는 업체 측으로부터 집기를 구입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위·수탁 계약조건 제7조 제1항 소정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 하기로 한 ‘위탁자’의 의무는 문언 그대로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운영을 위한 목적과 취지에 따라 ‘수탁자’와 성실하게 ‘협조’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 조항으로부터 ‘협조’의 정도를 넘어서 곧바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직접적,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시설 및 환경구축에 협조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계약종료 후 수탁자가 운영에 사용한 집기류를 구입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점, 계약조건에 교실집기 인수비용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 교실집기 인수 시 소요경비가 이미 포함되어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업체 역시 자신 소유의 집기를 학교에 설치하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여 영어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학교에서 수탁자에게 이전업체의 집기를 반드시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볼 때 갑 설 타당</p> <p><input type="checkbo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계약기간 중 자재를 구입하겠다는 사실에 대해 협조를 구한 적이 없음. 구입한 후에도 위탁자에게 구입 사실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없어 보임</p> <p><input type="checkbox"/>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타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면 나중에 위탁자가 그 비용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상환을 위한 요건으로는 위탁자(타인)가 수탁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임,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수강료를 받고 계약범위 내에서 수탁자 자신을 위하여 이 사건의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위탁자에게 자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임</p> <p><input type="checkbox"/> ‘공공계약’ 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p> <p><input type="checkbox"/> 위·수탁 계약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는 오로지 장소제공의 의무(제3조)뿐이라 할 것인데 이미 1층과 4층 교실을 제공함으</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로써 그 의무를 다하였고, 시설 및 환경구축에 협조할 의무 즉, 민간업체가 컴퓨터 등 집기류를 설치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수인할 의무는 있을지언정 이로부터 수업을 위한 집기 등을 학교 측에서 구비해 주어야 한다는 해석은 도출되지 않음</p> <p>□ 방과후학교 영어운영 위·수탁 계약조건 제7조 제1항에는 ‘위탁자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기자재 작동 불능이나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관리부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취지로 보아 집기 등은 학교 측에서 구비해 주어야 하고 수탁자가 구입하였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p> <p>□ 방과후학교 영어운영 위·수탁 계약조건 제7조 제1항에는 ‘위탁자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기자재 작동 불능이나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관리부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취지로 보아 집기 등은 학교 측에서 구비해 주어야 하고 수탁자가 구입하였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p>
6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를 임의대리인	<p>□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를 임의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제증명발급(생활기록부 등)이 가능한지 여부</p> <p>- 갑설: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p>	<p>□ 을설</p> <p>해당사안은 공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생활기록부와 같은 제증명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나아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으로 선임하여 교육제증명발급(생활기록부 등)이 가능한지 여부</p>	<p>- 을설: 만14세이상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p>	<p>대리인이 아닌 제3자를 임의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제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교육제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을설 교육제증명 발급행위는 자신의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보여지며, 민법상 부모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본인의 위임이 있으면 제3자에게 교육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짐</p> <p><input type="checkbox"/> 을설 교육제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를 보면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음, 단 개인정보보호법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임</p>
7	<p>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자문 요청</p>	<p><input type="checkbox"/>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시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어 청소년수련원(인천평화학교)을 공공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함</p>	<p><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시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되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하셨는데, ’ 갑설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됨</p> <p><input type="checkbox"/>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8조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인천광역시 교육감</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의 소관사무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됨.</p> <p><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청소년활동 진흥」 제 11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라고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및 교육감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소관 중앙부처(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것.</p>
8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관련	<p><input type="checkbox"/> 「국유재산법」 제18조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는바,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국유재산이 아닌 교육감 소유의 필지에 총괄청 협의 및 교육부장관 승인없이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한지?</p> <p><input type="checkbox"/>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유재산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교육감 소유 필지에 학교시설 증·개축 시 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p> <p><input type="checkbox"/> 교육감 소유 필지에 학교시설 증·개축 시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에 포함된 국유재산의 소유권(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되는지?</p> <p><input type="checkbox"/>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는</p>	<p><input type="checkbox"/> 국유재산이 아닌 교육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학교시설 증·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 협의 및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교육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학교시설 증·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교육감 소유의 토지는 국유재산이 아니므로 교육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학교시설 증·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도시계획시설(학교) 내에 국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국유재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자의 직접적인 사용·수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교육감이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움</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훈령에 의거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지?</p>	<p><input type="checkbox"/> 교육부장관의 승인없이 증·개축 가능</p> <p><input type="checkbox"/> 교육감 소유 필지 위에 학교시설 증·개축시에는 총괄청 협의 및 교육부장관 승인이 필요 없으므로, 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등이 필요없음</p> <p><input type="checkbox"/> 국유재산의 소유권(사용권원)을 확보할 필요없음</p> <p><input type="checkbox"/> 교육부 토지위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만 하면 되는데, 건물이 축조되어 있다면 증·개축시 교육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해 보임</p>
9	<p>채권가압류 시, 제3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p>	<p><input type="checkbox"/>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법원을 통해 가압류한 경우, 이러한 채권자의 가압류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p> <p><input type="checkbox"/> 가압류금(주된채권)의 시효가 소멸한 경우, 그 이자(종된채권)의 시효가 당연소멸 하는지?</p>	<p><input type="checkbox"/>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의 해당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p> <p><input type="checkbox"/> 가압류금(주된채권)의 시효 완성전 발생한 이자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기산점은 해당 이자채권에 대한 (권리자의)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기산</p> <hr/> <p><input type="checkbox"/>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의 해당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p> <p><input type="checkbox"/> 가압류금(주된채권)의 시효가 소멸한 경우, 그 완성전에 발생한 이자채권(종된채권) 또한 당연소멸</p>
10	<p>공무원노조 사무실 임대차 계약</p>	<p><input type="checkbox"/> 이전 대상 사무실 있는 건물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가 인천광역시이고, 한국노총인천지역</p>	<p><input type="checkbox"/>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점에서 법적으로 타당함</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관련 법률 자문	<p>본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상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의장을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 함</p> <p>- 임대인(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이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소유자가 아닌 위탁관리 중인 자(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의 보증금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p> <p>- 만약 보증금을 지불한다면 임대인(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의 채무불이행 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p>	<p><input type="checkbox"/> 건물임차시 위탁관리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건물 소유자에게 위탁보증금을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가급적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을 활용하기 바람</p>
11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항소 여부(실익) 및 변제공탁 관련	<p><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며 원고일부승 판결 선고된 ○○○사건의 항소 실익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항소심 진행시 지연이자를 최소화 방안과 항소심에서 책임비율에 대한 다른 판단으로 인해 판결금이 줄어드는 경우 차액 회수 방법에 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입증한다면 손해액을 줄일 수 있다고 보임.</p> <p><input type="checkbox"/>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지연이자 최소화를 위해서는 공탁 이외의 방안은 없어 보임.</p> <p><input type="checkbox"/> 상소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책임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p> <p><input type="checkbox"/> 지연이자 최소화를 위해서는 변제공탁 또는 1심 판결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항소심에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1심 판단을 취소하거나 과실비율에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가 많으므로 항소를 권유함.</p> <p><input type="checkbox"/> 변제공탁 이외에 지연이자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없으나, 항</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소심에서 1심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제공탁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님.</p> <p><input type="checkbox"/> 본 사건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비율을 다투는 것을 항소이유로 삼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 사건 당시 관련 법령 등의 충분한 검토 여부 등을 살펴보아 항소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p> <p><input type="checkbox"/> 가지급 외에는 이자 최소화 방법은 없어보이며, 1심 판결금 가지급 후 항소심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상황이 된다면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없이 집행문 발급이 가능함.</p> <p><input type="checkbox"/> 본 사건에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에도 원고의 과실을 20%만 이정한 것은 원고에게 치우쳐 상당히 유리하게 판단되어졌다고 보이며, 책임비율에 대하여 항소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1심 판결금 가지급 후 항소심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상황이 된다면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없이 집행문 발급이 가능함.</p>
12	○○분교 무단점유자 대상 재산압류 진행 절차 및 실익 등에 관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우리교육청의 소 제기로 진행 중인 ‘○○분교 무단점유 관련 퇴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관련으로, 향후 무단점유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재산 가압류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바, 가압류 진행이 필요성이 있는지, 실익	<input type="checkbox"/> 본안소송이 금전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판결 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압류신청을 병행하고 있음. 인천교육청도 위 본안소송 피고들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진행해야되나, 문제는 피고들이 자신의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및 예금채권을 소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음. 예금채권 가압류는 실익이 벗을 것 같고, 부동산 발견 시 부동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이 있는지, 가압류 진행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자문	<p>산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통상 원고와 피고가 금전거래를 하다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상대방의 거래은행을 알기 때문에 가압류 대상을 쉽게 특정할 수 있으나 인천교육청과 피고들의 관계는 예금채권 가압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그럴 경우 부득이 4대 은행(국민, 신한, 농협, 하나)을 거래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각 피고들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나, 청구금액의 1/5상당의 현금공탁을 위한 현금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강통계좌나 개설계좌가 없는 경우 실익 없는 가압류가 되어 예금채권 가압류를 권하지 않음.</p>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자인 원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피고가 20명이므로 각 피고들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 소유 여부를 파악하여 소유 여부가 파악된다면 당해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면 됨</p> <p><input type="checkbox"/> 1심 판결 전에는 부동산 소유자를 파악하여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함. 1심 판결 후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피고들에 대해서는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각 피고들에 대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며 공탁금이 필요 없음. 이러한 재산조치 없는 경우 집행불능으로 됨, 10년 동안 재산추적을 하다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시효연장 판결을 받아 10년 연장 후 계속 재산추적을 할 수 밖에 없음.</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3	수사기관 자료 제출(도서지역 생활비)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지? <input type="checkbox"/> 관내학교에서 수집 후 당 교육청에 공문 제출하여 교육청에 보관 중인 서류 일체를 제공해야 하는지?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 가능 범위?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제공자의 의견 청취 및 공개 동의 여부 등과 같은 절차 필요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존 법령에서 ‘처우’ 라는 단어를 극히 제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대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대상자들의 자존감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어떠한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인지도 특정할 수 없어 임의 제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 <input type="checkbox"/>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공개 동의 등 절차 필요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제2항 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자료 제공 가능 <input type="checkbox"/> 공개 범위를 제한할 필요 없음 <input type="checkbox"/>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필요 없음
14	재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련 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판결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반환요구 및 경고요구의 인과관계가 있는 포괄처분이라 경고요구의 처분까지 취소해줘야 하는지 판결문 해석 의견은? <input type="checkbox"/> 통보 공문(2020.12.30.)이 행정소송에 대상이 되는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input type="checkbox"/> 판결문은 반환처분에 대하여만 취소를 명한것임. <input type="checkbox"/> 신청 및 수령의 주체가 법률상 유치원이 아니라 학부모임으로 별도로 공모 또는 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치원장의 경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봄 <input type="checkbox"/>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고,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으므로, 통보 공문은 단순한 알림에 해당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처분에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반환처분의 취소 이외의 경고처분까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음</li> <li><input type="checkbox"/> 신청의 주체는 학부모라고 판단하였으나, 운영하면서 출석부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신청주체를 떠나 방과후과정 운영을 하는 유치원도 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준수하지 않고 지원금을 청구하였다면 경고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li> <li><input type="checkbox"/> 통보 공문은 반환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경고처분을 다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새로운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li> <li><input type="checkbox"/> 판결문은 반환처분의 취소만 판단한 것으로 경고처분까지 취소해줄 필요 없음</li> <li><input type="checkbox"/> 추후 동종사건의 경우 경고요구는 자제해야 하나 이번 경고처분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음</li> <li><input type="checkbox"/> 공문의 취지를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에 따른 이행을 알려주는 단순 고지로 판단됨</li> </ul>
15	학원 허위·과대광고 사무처리 관련	<input type="checkbox"/> 특정 메이크업 학원이 실제 교습을 진행하지 않는 과목(반영구 화장)의 키워드를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에 노출한 행위가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 허위·과장의 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문제된 문구가 표상하고 있는 교습과정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학습자의 모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의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려음.</p> <p><input type="checkbox"/> 해당강사가 구체적으로 교습을 하지 않아 소비자인 학생의 주의력이나 신뢰성 실추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여짐.</p>
16	학원의 반영구 화장술 교습 수강생 모집과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p><input type="checkbox"/> 현재 의료인 외의 시술이 불법인 반영구 화장과 관련하여, 학원에서 반영구 화장술 교습 수강생을 모집한 행위가 실제 교습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그 모집 행위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되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2019두50014 판례의 ‘의료행위’는 실제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기수범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실제 교습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모집행위로는 의료행위가 행하여 졌다고 볼 수 없음.</p>
17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p><input type="checkbox"/> 관내 공익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이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1항4,5호 및 제2항의 전단에 해당되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한지?</p> <p><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2항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의 조항과 관련해서 “설립허가 취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해 주무관청 판단이 적정한지 여부? 설립허가 취소</p>	<p><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타당</p> <p><input type="checkbox"/> (갑설) 타당</p> <p><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타당</p> <p><input type="checkbox"/> (갑설) 타당</p> <p><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타당</p> <p><input type="checkbox"/> (갑설) 타당</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을 선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설립허가 취소”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 달성할 수 없음  (을설) “법인설립허가 취소” 이외에 다른 방법, 시정명령 등을 선행해야함</p>	
18	계약해제 사유,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p><input type="checkbox"/> 건축분야 정밀점검용역 책임기술자 확인용 제출 서류에서 해당분야(건축분야 고급기술인)의 기술인이 없음에도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토목분야 초급기술인)를 제출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 처분을 해야하는데,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p>	<p><input type="checkbox"/>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법하게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입찰실시기관의 책임하에 심사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입찰참가자가 입찰 참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함이 없이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 서류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기관의 심사소홀로 낙찰자로 선정되어 사후에 무효로 되었다면 입찰실시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입찰실시기관의 심사소홀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선정되어 무효로 된 경우 입찰실시기관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찰 무효 또는 계약해제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등을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인이 아닌 토목분야의 초급기술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학교 노후 건축물 정밀점검용역”은 토목분야의 초급 기술인 자격으로는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인이 아니므로,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무효에 해당됨.</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계약보증금은 입찰무효,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위약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할 수 있으며,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부정당제재 가능하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낙찰자가 입찰 공고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고의로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찰이 무효에 해당되며, 입찰 방해행위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사유로 보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입찰 참가시부터 정밀점검 수행 기술인이 미비한 경우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부정당제재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19	○○○중 용벽설치에 따른 손실보상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학교 경계 3면 용벽 조성에 따라 재산 평가 저하(손실)에 해당되어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교는 사업지구 밖에 있어 공익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일반 손해배상(민법)을 적용하더라도 일조권, 조망권,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려워 보임(판례 근거) - 단차 최소화에 대한 약정위반을 이유로 손해배방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임 <input type="checkbox"/> 학교 경계(3면) 용벽 조성으로 재산평가 저하 등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발생한 손해가 통상 수인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정도에 이른 경우에 청구 가능 (통상 수인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 여부는 전문가 감정 필요)
20	○○○중 개발계	<input type="checkbox"/> 개발계획 변경 인가시 부과된 조치계획 미이행을	<input type="checkbox"/> 단차없는 부지조성, 도로인상 관련 착공전 협의 등 조건 등의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획 변경 인가시 부과된 조치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용벽공사 중지 가능 여부</p>	<p>이유로 용벽공사 중지 가능 여부</p>	<p>미이행 이유는 공사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공사중지 명령은 구청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으나, 구청장은 공사 중지 명령을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에 불과하여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없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p>
21	<p>한전의 전기공급 설비 설치장소 제공의 유무상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지중패드의 설치장소제공에 대하여 한전은 무상 사용동의를 요구함에 반하여 우리 지원청은 무상의 근거가 없음을 주장</p>	<p><input type="checkbox"/> 한전기본공급약관에 학교가 설치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전의 무상제공 의견이 타당하나 약관의 불공정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한전은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지 아니한 회사이므로 공유재산법에서 사용료를 감면해줄 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유상이 타당</p> <p><input type="checkbox"/> 한전의 지중공급설비 설치공간 제공 협약서의 근거가 되는 약관이 약관법 제2조에 비추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인 조항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한전은 공유재산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것임</p>
22	<p>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p>	<p><input type="checkbox"/> 절대보호구역내에서는 노래연습장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 노래연습장은 관할관청에 등록·신고되어(1997.7.21.) 현재까지 운영중임 - 관할관청에 등록·신고하여 운영 중이나 절차상</p>	<p><input type="checkbox"/> 무효,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근거: 당시 관련 법령에 신고 수리시의 검토 기준이나 신고 수리 거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무효,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요청	<p>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보아 무효,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p> <p>- 무효, 취소 사유가 된다면 관할구청에 무효,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p>	<p>답변의 실익이 없음.</p> <p><input type="checkbox"/> 무효,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근거: 신뢰보호의 원칙</p> <p><input type="checkbox"/>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자가 될 수 없음.</p> <p><input type="checkbox"/> 행정상 제재처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근거: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동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p> <p><input type="checkbox"/> 행정상 제재처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근거: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동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p>
23	폐교 불법무단점유자 코로나확진과 관련한 법률자문	<p><input type="checkbox"/> 소송 중인 폐교 무단점유자들에 대하여 추가로 형사고발 가능한가?</p> <p><input type="checkbox"/> 폐교에 대하여 단전 및 단수가 가능한가?</p> <p><input type="checkbox"/> ○○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교육청의 대응 방안은?</p> <p><input type="checkbox"/> 집합금지 명령이 종료된 후에도 교육청에서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지?</p> <p><input type="checkbox"/> 집합금지 명령기간 중 폐교 시설을 철거할 수 있는지?</p> <p><input type="checkbox"/> ○○군의 무허가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p> <p><input type="checkbox"/>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p>	<p><input type="checkbox"/> 적용되는 처벌조항이 없어 형사고발이 어려움</p> <p><input type="checkbox"/> 점유자들의 동의 없이 단전 및 단수할 경우 업무상방해죄 성립 / 단전 및 단수 어려움</p> <p><input type="checkbox"/> 구상권을 청구하기전 ○○군을 설득하여 구상권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p> <p><input type="checkbox"/> 집합금지명령은 지자체만 할 수 있어 교육청에서는 집합금지 연장을 군에 요청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시설물을 불법점유자들이 건축한 것이라면 판결에 따른 건물 인도 집행 후 가능</p> <p><input type="checkbox"/> 불법건축물의 증축 주체가 무단점유자들임을 군에 알려 교육청의 책임을 면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행정대집행은 건축허가권자인 군이 주체가 되므로 교육청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음.</p> <p><input type="checkbox"/> 무단점유 사실만으로는 형사고발이 어려움</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목적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지위에서 단전 단수 가능 <input type="checkbox"/> 합법적인 방법으로 관리의무를 다 하고 있다할 수 있어 구상권 청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집목적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지위에서 폐쇄 가능 <input type="checkbox"/> 행정대집행 권한은 관할청인 강화군청에게 있어 철거 권한 없음 <input type="checkbox"/> 불법건축물의 증축 주체가 무단점유자들임을 군에 알려 교육청의 책임을 면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행정대집행은 건축허가권자인 군이 주체가 되므로 교육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점유 사실만으로는 형사고발이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단전 및 단수할 경우 업무상방해죄 성립 / 단전 및 단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임차인의 안전 등 보호의무까지 임대인의 의무로 볼 수 없어 구상권 청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법원판결 권원 없이는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행정대집행 권한은 관할청인 강화군청에게 있어 철거 권한 없음 <input type="checkbox"/> 불법건축물의 증축 주체가 무단점유자들임을 군에 알려 교육청의 책임을 면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행정대집행은 건축허가권자인 군이 주체가 되므로 교육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음.
24	○○초 통학버스 입찰사무과 관련한 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공고문 내용중, 가. 입찰 참가자격 사항에 대한 해석 등	<input type="checkbox"/>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소유업체로 선정하여 왔던 바, 민원인의 주장은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사료됨. 나아가 입찰참가자 입장에서 해석상의 의문이 있다면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문의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해석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것임.</p>
25	<p>교육환경평가서 조치결과 이행관련 합의서 체결 조문 검토 의뢰</p>	<p><input type="checkbox"/> 인천○○초와 (주)◇◇◇◇건설 ◎◎-1블럭(□□□□□□□)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조치결과 이행관련 합의서 체결 예정인바, 합의서 내용이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보상 및 기타 문제해결에 제한조문이 되지 않을지 판단이 어려워 자문을 구함</p>	<p><input type="checkbox"/> 특별히 문제되는 조항은 없어 보이나, 내용을 추가해서 “교통안전” 관련하여 ‘학생들 등하교시에는 건설사에서 안전요원 배치하여 아이들 등하교시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라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p> <p><input type="checkbox"/> 공사와 관련한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를 망라하여 관련자들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공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보임으로 공사로 인하여 관련자들이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재산상 및 신체상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함.</p> <p><input type="checkbox"/> 합의서의 효력이 건설사에 미치도록 하려면 합의서 계약당사자가 건축공사 현장소장 명의를 아니라 건설사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건설사로부터 대리위임에 관한 근거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함.</p>
26	<p>청탁금지법 사무처리와 관련된 법률 자문</p>	<p><input type="checkbox"/>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2020. 3. 14.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운동부 소속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고, 같은 해 5. 위와 같은 사실을</p>	<p><input type="checkbox"/> 질의 대상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의 단서 규정(다만, 제9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운동부지도</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자진신고하였음, 학교는 해당 금액(축의금) 전액에 관하여 금품수수대장을 작성한 후 각 학부모에게 이를 모두 반환하였음, 학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사안을 청탁금지법 부적절 처리 사례로 판단함에 따라, 실제 위 사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p>	<p>자 역시 과태료부과 대상인 것으로 사료되고,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임의적으로 과태료를 감면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임.</p> <p>□ 사안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해당합니다. 결혼식 축의금이라고 해도 결혼식 당시 5만 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축의금은 수수가 금지되므로 위 법 제8조 제5항 위반의 경우 법 제23조(과태료 부과) 제5항 제3호에 따라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장은 위 시행령 제34조 제1항 1호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p>
27	○○사랑터 기금에 관한 질의	<p>□ 1998년~2010년까지 ○○학교 졸업생의 집단 돌봄 거주 시설을 위한 모금액 학교세외 계좌 보관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기탁자의 법적 권리 유무</li> <li>- (법적 권리가 있는 경우) 기금 사용을 위한 조치 방안</li> <li>- 분쟁 소지 없는 기금 사용 방법에 대한 제안</li> </ul>	<p>□ 기금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다고 사료되나 인혜사랑터 구축 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아니됨</p> <p>□ ○○사랑터 구축에 상응한 사업 및 ○○학교와 관련된 수혜자가 있게 사업을 추진</p> <p>□ ○○사랑터 기금 사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과 절차 마련 방안에 찬성함</p> <p>□ ○○사랑터 모금회의 법적 성격, 개별 기탁서 존재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서면 자료 유무에 따라 기탁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음</p> <p>□ 기탁자들이 다른 목적으로 해당 금원을 사용하는 것에</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정당한 대표권자의 의사를 확인 받는 등도 한 방법임.</p> <p>□ 기탁자들의 동의를 받아 용도를 변경하는 것 외에 법정 분쟁 소지가 없는 방법을 확정할 수 없음</p>
28	2021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관련 자문 요청	<p>□ 계약 차량 중 1대를 당초 계약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으로 배정하여 운행한 사실이 발각되어 즉각 시정조치 요구 후 당초 계약차량으로 변경함. 이 경우 (회사 직영차량 배정·차량교체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계약업무처리의 부적절함)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정조치 및 위약금 부과로 해결 가능한지 여부</p>	<p>□ 계약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4일간 이전 등록이 안된 상태로 운행한 것이고 즉시 이를 시정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지 사유는 되지 않음. 따라서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계약해지 외에 다른 합당한 조치가 있으면 그 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함</p> <p>□ 계약업체가 당초 계약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으로 학교장에게 알리지 않고 통학버스로 운영한 것은 계약특수조건을 위반한 것이 맞음. 그러나 최근 연식 차량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45인승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통학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계약업체가 즉시 시정조치한 점,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동일사안 발생시 계약해지 가능하며, 위약금은 규정 조항이 없고 학교가 특별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므로 위약금 청구는 어려워 보임</p> <p>□ 해당업체는 통학차량 교체시 5일 전에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영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영한 잘못이 확인됨. 우선 교체 5일 전 신청은 계약기간 동안 2회 이상이어야 하나</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1회에 해당하고 직영차량이 아닌 차량운행의 문제는 업무오류에 따라 지연된데 그 이유가 있고 시정요구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시정요구를 즉시 조치한 것으로 보는데 경고 사유로 삼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함</p> <p><input type="checkbox"/> 계약차량 이전등록이 전세버스조합의 이전등록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시정요구시 즉시 시정하였으므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p>
29	지필고사 부정행위자 처리	<input type="checkbox"/> 지필고사에서 교실 공기청정기 위에 휴대폰을 방치하고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부정행위 처리(0점처리)에 관한 판례 및 민원에 대한 대응 요령 질의	<p><input type="checkbox"/> 같은 경우의 학내 처리에 대한 판례는 없으나, 유사 판례가 존재하며, 학교의 사전 조치 및 학업성적관리 규정 적용이 민원 대상이 될 수 없음.</p> <p><input type="checkbox"/> 같은 경우의 학내 처리에 대한 판례는 없으며, 학부모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교육청의 지침이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여 함을 자문함. 다만 학부모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시 학교장이 피고가 되어 대응하게 될 것임.</p>